

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계약상대자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,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계약상대자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##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

서울시복지재단(이하 “발주부서”라 한다)과 아모스시스템(이하 “계약상대자”라 한다)은 “발주부서”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계약상대자 체결한다.

**제1조 (목적)** 이 계약은 “발주부서”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위탁하고, “계약상대자”는 이를 승낙하여 “계약상대자”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계약상대자 정함계약상대자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용어의 정의)**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-7호) 및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-45호)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.

**제3조 (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)**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(문서의 전산화)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서울시 각 25개 구청에서 보관하는 꿈나래,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 및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보관하는 약정서류의 반입 및 반출
2. 상기 보관 문서의 이미지 스캔 및 데이터 생성 후 USB 납품

**제4조 (재위탁 제한)**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발주부서”의 사전 승낙계약상대자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“발주부서”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.

② “계약상대자”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계약상대자 즉시 “발주부서”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5조 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** “계약상대자”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제3항 및 제29조,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-7호)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·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6조 (개인정보의 처리제한)**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② “계약상대자”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

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6조 및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-7호)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“발주부서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“계약상대자”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“발주부서”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7조 (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 등)** ① “발주부서”는 “계약상대자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계약상대자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“계약상대자”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1.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
2.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
3.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
4. 목적외 이용·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
5.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
6.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“발주부서”는 “계약상대자”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계약상대자 요구할 수 있으며, “계약상대자”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“발주부서”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( )회 “계약상대자”에게 교육할 수 있으며,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1)

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“발주부서”는 “계약상대자”와 협의하여 시행한다.

**제8조 (손해배상)** ① “계약상대자” 또는 “계약상대자”의 임직원 기타 “계약상대자”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“계약상대자” 또는 “계약상대자”의 임직원 기타 “계약상대자”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“발주부서”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“발주부서”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“발주부서”는 이를 “계약상대자”에게 구상할 수 있다.

본 계약의 내용계약상대자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, “발주부서”와 “계약상대자”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발주부서

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

성명 : 서울시복지재단 한영희



계약상대자

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69가길 29 1-1

성명 : 아모스시스템 장성안



1) 「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」(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-7호)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계약상대자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